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제도

● 신청기관: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 I. 일본의 청년(若者) 인구현황

일본은 197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동향에 따라서 일본 청년<sup>1)</sup>층의 인구 역시 감소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청년백서”<sup>2)</sup>의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의 30세 미만의 인구는 197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1974년에 처음으로 50%를 밑돈 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3년 10월 1일 현재, 30세 미만의 인구는 3,35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7.9%이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818만명, 여자는 1,733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지만, 3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 일본에서의 ‘청년’ 연령구분

- 1)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若年’을 ‘청년’으로 이해하여 사용한다.
- 2) 閣府, 「平成26年版子ども 若者白書」, 2014.



아동 및 청년의 연령구분은 각종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명칭으로 20세 미만의 자, 형법에서는 형사책임연령이 만 14세로 정의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로 정의하여 20세 미만의 자, 그리고 혼인연령은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노동기준법에서는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로, 아동은 15세에 달한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이 종료될 때까지의 자로 정의되어 있다. 근로청소년복지법에서는 근로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제8차 근로청소년복지대책기본방침(2006년 10월 후생노동성)에서 ‘대략 35세 미만’으로 삼고 있다.<sup>3)</sup>

그리고, 아동·청년비전<sup>4)</sup>에 따르면, 청년은 사춘기, 청년기인 자로, 시책에 따라서는 40세 미만까지의 포스트(post) 청년기의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기란 대략 18세에서 대략 30세 미만의 자이며, 포스트 청년기란 청년기를 지나 대학 등에서 사회 각 분야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나갈 자질이나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자나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자, 4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Ⅲ.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과 아동·청년비전의 주요 내용

일본의 청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제도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弱者育成推進法)」에 의거하여 책정된 지원추진대강인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에 따라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아동·청년계획의 입안 및 실시가 책무로서 규정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조사연구, 인재양성, 정보의 제공과 조연에 힘쓰며, 각지에는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를 마련하여 사무의 총괄, 연락조정, 기타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1.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의 성립 및 시행 배경

3) 閣府, 「平成26年版子ども若者白書」, 2014.

4) “子ども若者ビジョン 子ども若者の成長を援し一人ひとりを包する社をめざして” 2010년 7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 결정(平成22年7月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決定).

2000년대 후반,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나 프리터(Freeter)의 숫자가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년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계속 영향을 미쳐 복잡하게 될 위험성과 경제적 격차의 확대와 세대에 걸친 고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또한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의 결과로, 다양한 정보의 범람과 그 전달수단의 다양화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모든 아동과 청년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2008년 12월에 ‘청소년육성시책대강(少年育成施策大綱)’이 책정되었다.<sup>5)</sup> 하지만, 이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이 책정된 후에도 니트나 운둔형 외톨이(ひきこもり) 등, 청년의 자립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화되고, 아동학대, 왕따, 소년이 저지르는 중대사건, 유해정보의 범람 등, 아동과 청년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9년 제171회 국회에 정부제출법안으로서 「청소년종합대책추진법안」이 제출되었고, 중의원에서 수정을 거쳐 2009년 7월에 국가의 본부 조직, 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강, 지역에서의 계획, 원스톱 상담창구 등의 구조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네트워크정비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년육성지원법」(2009년 법 71)이 전화일치로 가결, 성립되어 2010년 4월 1일에 시행되게 되었다.

## 2.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의 개요<sup>6)</sup>

### (1) 기본이념(제2조)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동 및 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자각하면서 자립된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타자와 함께 차세대 사회를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작성(제8조)

5) 2008년 12월 12일 소년육성촉진본부결정.

6) 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lawe-gov.go.jp/htmldata/H21/H21HO071.html>.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이하, 대강)을 작성한다. 대강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① 기본적인 방침, ②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 기타 각 관련분야에서의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수학 및 취업의 어느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아동·청년, 그 외의 아동·청년으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sup>7)</sup>

### (3) 아동·청년계획의 작성(제9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국가의 대강을 감안하여 도도부현 아동·청년계획(시정촌 아동·청년계획)을 작성할 노력의무가 규정되었다. 아동·청년계획의 내용은 국가의 대강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상황, 안고 있는 문제 등을 바탕으로 지방공공단체가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 (4)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제13조)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는 지방공공단체가 아동·청년육성지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관계기관의 소개, 그 외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을 행하는 거점으로서 마련된 것으로, 상담 시 관련부서로 계속 떠넘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 (5) 방문지원(outreach)의 실시(제15조)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하여 방문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 (6)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제19조)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란 니트, 은둔형 외톨이 등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 기타 각 분야의 관계기관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협의회의 대상자는 수학 및 취업

7) 본법의 제정에 따라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아동·청년 비전(子ども 若者ビジョン)’이 작성되었다.

의 어느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아동·청년인 청년무업자(이른바 니트)와 운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그 외 아동·청년으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 자로 학교 등교거부, 비행, 섭식장애, 적응장애 등의 문제에 기인하여 취업이나 수학상태에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그 대상연령은 0세에서 30대이다. 그러나 복지, 고용 등의 개별분야에서 각각의 담당기관만으로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까지 모두 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협의회에서는 관계기관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케이스를 다룬다.

### (7) 아동·청년지원조정관, 아동·청년지정지원기관(제21조, 제22조)

아동·청년지원조정기관이란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협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완수하는 것으로, 운영의 핵심으로서 지원의 실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관계기관 등과 연락조정을 한다.

### (8) 비밀유지의무(제24조)

협의회는 민간을 불문하고 구성되는 모든 자가 협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상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정보교환 및 관민간의 제휴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다.

### (9)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의 설치(제26조~제33조)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내각관방장관 및 내각부특명담당대신(청소년육성)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며, 이 본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작성을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 (10) 벌칙(제34조)

제24조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협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3. 아동·청년비전(子ども 若者ビジョン)의 개요<sup>8)</sup>

아동·청년비전이란 아동·청년추진법의 시행에 따라 청소년육성지원대강(2008년 12월 결정)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작성된 것이다.

먼저 아동·청년비전에서는 ① 아동·청년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 ② 아동·청년은 성인과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 ③ 자기를 확립한 사회의 능동적 형성자가 되기 위한 지원, ④ 아동·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을 사회 전체에서 중층적으로 실시, ⑤ 성인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의 재검토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 주요한 중점 과제로는 ① 아동·청년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 ②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노력, ③ 지역에서의 다양한 담당자의 육성, 등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 IV.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아동·청년계획’의 주요 사례

본절에서는 상기 언급한 법안과 대강에 의거하여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실시 및 운영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소개한다.

### 1. 카나카와현(神奈川県)<sup>9)</sup>

‘카나가와 청소년 육성·지원지침’은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로 한 계획으로, 세 가지의 기본목표와 청년자립지원시책에 관계되는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의 기본목표는 청소년의 성장의 기반조성과 사회참여의 추진이다. 이는 청소년이

8) 2010년 7월 23일 책정, 자세한 내용은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pdf>

9) 카나가와 청소년 육성·지원지침(かながわ 少年育成 支援指針), <http://www.pref.kanagawa.jp/cnt/f4151/p35672.html>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기초적인 체력·학력 및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성장하는 힘을 기르고,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을 육성하고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심을 향상시키면서 창조성과 에너지를 지역사회에서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 왕따, 등교거부, 비행, 폭력행위 등의 과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종합적 상담 및 지원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풍부한 자질과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적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셋째,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만들기이다.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어른들의 의식개혁을 추진하면서, 급격하게 진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응이나, 청소년의 복지를 해치는 범죄피해 등의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사회전체에서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커뮤니티 만들기에 노력한다.

상기의 기본목표 가운데,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 시책의 방향으로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종합적 상담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상담·지원기관 및 NPO 등의 민간단체의 연계를 촉진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가족에 대하여 효과적인 상담 및 지원이 개별적 및 계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로 하는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체제(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기능)의 정비나 청내에서의 횡단적인 체제에 근거로 하는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카나가와현 홈페이지의 ‘카나가와현 청소년 상담지원정보 사이트’의 운영과, 전화상담창구를 기재한 ‘상담기관소개카드’의 현내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배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에 대한 주지를 도모한다.

그 외 사회적 및 경제적인 자립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근로관 및 직업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을 익히기 위한 커리어 교육을 내실화시킴과 동시에, 기업 등과 연계 및 협력하여 자세한 직업상담,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의 지원을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책전개의 내용으로서는 먼저, 청년의 취업지원의 강화에 대해서는 ‘카나가와 청년취직지원센터’에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고 있는 취직활동의 어려움 등에 대응하는 커리어 카운슬링, 면접대책 등의 취직에 도움이 되는 취직활



동지원세미나의 실시, 취직정보 및 직업훈련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립원조 홈에서 취업 등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등, 청년의 취직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관 및 직업관의 형성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해서는 학교나 고등직업기술학교 등에서 커리어 교육, 직업교육, 취직지도 등을 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근무방식,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지식이나 견해, 발달단계에 따른 근로관 및 직업관의 형성 등을 추진하는 등, 고등직업기술학교 등에서 직업훈련이나 커리어 컨설팅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지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는 장학금제도, 학비감면제도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생활지원을 함과 동시에, 생활보호세대의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는 아동지원원의 배치, 지원프로그램의 책정 등에 의하여 아동의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카나가와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sup>10)</sup>를 마련하여, 카나가와현의 아동이나 청년(대략 30대까지)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일차 상담창구인 카나가와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교육·복지·경찰 등의 직원 외에 임상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사회복지사, 커리어카운셀러 등의 상담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복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케이스나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현이나 시정촌의 전문기관 등에 정중하게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카나가와현립 청소년센터의 상담스텝 외에 은둔형 외톨이, 등교거부 등의 서포트 활동을 하는 NPO 등에서 활동경험이 풍부한 어드바이저의 상담을 받는다. 그리고 현 서부청소년서포트상담실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등교거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 2. 군마현(群馬県)<sup>11)</sup>

군마현은 ‘군마현 아동·청년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sup>12)</sup> 군마현의 계획의 기본 목표는 사람과 사회의 연결을 소중히 하면서,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여 마음넓은 삶의 방식

10) 카나가와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http://www.pref.kanagawa.jp/cnt/f100332/p453436.html>.

11) 아동·청년계획(群馬 子ども 若者計), <http://www.pref.gunma.jp/03/c2900034.html>.

12) 대상연령은 0세에서 대략 30세 미만까지의 자이지만, 시책에 따라서는 대략 40세 미만까지의 자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이 가능한 아동·청년의 육성에 있다. 세 가지의 목표로 하는 시책체계가 있다. 첫째로는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서, 하부의 시책인 ① 아동·청년의 자기형성 및 자기긍정감 함양의 지원, ②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힘의 양성, ③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 자립심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체험과 교류, ④ 청년의 직업적 자립, 취업 등의 지원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로는 곤란함을 가진 아동·청년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하부 시책인 ① 개별 문제마다의 상담과 지원, ② 종합적인 상담·지원기능의 확립을 위한 대응의 체계가 있다. 세 번째로는 아동·청년과 함께 자라는 지역·사회만들기로서 ① 가정에 대한 지원, ② 지역활동에 대한 지원, ③ 연결고리를 살려 함께 만드는 사회의 추진의 체계가 있다.

이 가운데 청년의 직업적 자립, 취업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아동·청년의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내실있는 커리어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취업단계에서도 자세한 취직지원과 재도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직업훈련을 통하여 일할 의욕의 양성을 도모한다.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의 대응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위한 ‘일하는 것’의 의의를 실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직업관·취업의욕의 육성을 위해서는 커리어 교육과 직업체험의 실시가 있는데, 아동·청년에 근로관과 직업관을 양성하고 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면서, 각 학교단계를 통하여 커리어 교육 및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한다. 또한 직업훈련, 인턴쉽 등의 체험적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취업능력·의욕 습득의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추진하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의 양성을 도모한다. 예를 들면, 현립산업기술전문학교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군마현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청년기능자를 육성하면서, 직업의욕의 계발, 동기부여 등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각 세대에 기능계승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셋째, 취업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 등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잡카페(job cafe) 군마<sup>13)</sup>에서는 구직 중이거나 불안정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에 대

13) 잡카페 군마(군마현 청년취직지원센터)는 군마현이 설치하고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청년의 능력향상이 취직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1개소에서 종합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비된 청년을 위한 취직지원 센터이다. 군마현 내에는 3개소(다카사키시, 기류시, 누마타시)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 카운슬링에서 직업소개, 취직 후의 추적까지의 원스톱으로 일관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경제단체와 연계하여 수용기업의 개척이나 연수, 잡카페 군마에서의 그룹워크 및 일 체험을 통하여 미취직 졸업자나 연장 프리터의 제도전을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직면접회나 기업설명회 등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지역활동에 대한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지역만들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할 수 있는 지역환경만들기는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먼저, 아동·청년이 체험하고 교류하는 장의 확보 및 지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사회교육시설이나 청소년시설에서의 사회 및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거나, 문화 및 스포츠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청년의 자기실현의 장을 제공하거나, NPO나 자원봉사활동 등의 시민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청년의 사회와의 접점을 만든다. 둘째,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추진하여, 지역의 사람들과 학교가 연결되는 장소로서 '학교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사회환경의 건전화의 추진을 위하여, 군마현 청소년건강육성조례를 적절하게 운용하여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고 심신 모두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한다. 또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정화에 힘쓴다. 넷째, 아동·청년의 안전 및 안심의 추진을 위하여, 현·경찰·시정촌·지역방법 자원봉사활동단체·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안심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체제의 정비나 계발 및 관계기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안전·안심한 인터넷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아동·청년을 유해정보로부터 지키는 활동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역활동단체와의 협동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와 행정이 협동하여 아동·청년의 자립을 위한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과 지역활동단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대응추진을 생각해 나가는 장소를 마련한다. 또한 자주방법 패트론탄체나 군마현 YOUNG 방법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방법활동을 추진한다.

### 3. 오카야마현(岡山県)<sup>14)</sup>

오카야마현에서는 ‘오카야마 아동·청년육성지원계획’을 시행하고 있다.<sup>15)</sup> 오카야마의 지원계획의 체계를 살펴보면, 네 가지의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의 목표는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중점 목표는 ① 아동·청년의 자기형성에 대한 지원, ②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양성, ③ 아동·청년의 자립을 육성하는 다양한 교류, ④ 아동의 직업적 자립과 취업지원이 있다. 두 번째 기본목표로는 곤란함을 가진 아동·청년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중점 목표로는 ①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응, ② 곤란함을 가진 아동·청년과 그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응이 있다. 세 번째의 기본목표는 아동·청년과 함께 자라는 지역·사회만들기이다. 중점 목표로는 ① 가정에서의 교육력의 향상, ② 지역에서의 교육력의 향상, ③ 상담체제의 충실, ④ 아동·청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건전화가 있다. 마지막 기본 목표로는 추진체제의 정비 및 내실화로, 그 중점 목표로는 ① 현의 체제정비, 국가 및 시정촌간의 연계의 충실, ② 민간조직과의 연계의 충실이다.

이 중, 청년의 직업적 자립과 취업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취업능력과 의욕의 습득 촉진을 위한 노력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시책으로서 커리어 교육의 추진이 있다. 아동·청년의 바람직한 근로관·직업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한 계통적인 커리어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향토 오카야마의 전통산업이나 특색이 있는 산업, 해외에서 활약하는 산업을 체험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 이외에서도 장래에 대한 꿈과 동경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한다. 또한 학교,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직장견학이나 직업체험학습 등 직업과 경험할 기회를 만드는 등 고교생과 대학생 등의 인턴쉽을 추진한다.

또 다른 중점 시책으로서의 능력개발·직업훈련의 내실화이다. 직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청년의 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 등에서의 직업훈련을 충실히 한다. 또한 세세한 커리어 컨설팅<sup>16)</sup>이나 기업실습과 좌학을 편성한 실천적

14) 오카야마 아동·청년육성지원계획(岡山 子ども 若者育成支援計), <http://www.pref.okayama.jp/page/334312.html>.

15) 계획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년’의 범위는 30세 미만의 자이지만, 고용 등의 특정 시책분야에서는 40세 미만의 자도 계획의 대상으로 한다.

16) 커리어 컨설팅이란 개인이 자신의 적성이나 직업경험 등에 따라 직접 직업생활계획을 하고, 이에 입각한 직업선택이나 직업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개별의 희망에 따라 실시되는 상담이나 그 외의 지원을 말한다.



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또한 직업적 자립과 취업지원에 관한 또 다른 목표로는 취업지원의 내실화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시책으로서는 신규졸업자의 취직지원을 하는 것이다. 합동취직면접회를 개최하거나 직장견학회를 실시하는 등, 현내에 있는 기업과의 매칭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규졸업자를 비롯한 청년의 현내 기업에 대한 취직을 촉진한다. 또 다른 중점 시책은 오카야마 청년취직지원센터에서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오카야마 청년취직센터<sup>17)</sup>의 카운슬링에서는 헬로워크(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직업소개까지의 일관된 직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규고용으로서의 취직을 지원한다. 또 다른 시책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취농(就農)을 위한 연수의 실시 등에 따른 농업에 대한 취업지원이나, 오카야마현 복지인재센터<sup>18)</sup>에서의 복지분야 직업·취업알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취업을 지원한다.

그 외 지역에서의 다양한 담당자의 육성에 관한 목표를 살펴보면, 아동·청년의 육성지원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완수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면서 일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연결고리의 약체화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가족이나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학교지원, 가정교육지원, 아동·청년의 건전한 육성 등에 힘쓰는 다양한 담당자를 육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시책은 먼저 청소년 리더 등의 육성을 들 수 있다. 학교·가정·지역의 연계를 추진하는 코디테이터나 자녀양육 서포터 리더 등 지역에서 학교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자연체험이나 농업체험, 환경학습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면서 이러한 지도자의 지도력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계되는 기초적인 지식 및 기능을 배우는 강좌를 실시하여 지역이나 학교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또 다른 중점 시책은 같은 세대 또는 연령이 비슷한 세대에 의한 상담 및 지원을 하는 것

17) 오카야마 청년취직지원센터란 청년실업자나 프리터 등의 불안정 취업자를 대상으로 카운슬링에서 헬로워크를 통한 직업소개까지의 일관된 취직에 관한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5월에 오카야마역 앞에 개설하였다. 2006년 4월부터 쿠라시키시, 츠야마시에서도 상설 상담창구를 설치하였다.

18) 복지인재센터란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확보를 목적으로, 직업안정법에 근거로 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 인재확보상담사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계발활동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카야마현에서는 오카야마현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되어 있다.

이다. 같은 세대 또는 연령이 가까운 세대의 학생 자원봉사의 도입을 추진하고 상담지원을 내실화한다. 또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료에 의한 상담활동(피어 카운슬링)<sup>19)</sup>을 보급한다. 이에 더불어 비행 등 문제를 안고있는 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을 실시한다.

#### 4. 아키타현(秋田県)<sup>20)</sup>

아키타현에서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책을 체계화한 종래의 ‘아키타 청소년 플랜’에서 그 비전을 바탕으로 하면서 모든 아동·청년의 성장 및 발달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청년이 놓여진 상태에 따른 시책을 전개하는 ‘아키타 아동·청년 플랜’<sup>21)</sup>을 확정하였다.

아키타 아동·청년 플랜이 목표로 하는 사회는 아동·청년과 어른이 함께 존중하고 서로 지탱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활력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시책은 첫째, 사회를 구성하는 담당자로서의 아동·청년을 규정하는 것이다. 아동·청년과 어른이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담당자로서 함께 살아간다. 둘째, 아동·청년이 놓인 상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인 상황, 발달단계 등에 따라 세세한 지원을 실시한다. 셋째, 다양한 주체에 의한 대응과 네트워크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연계를 추진해나가면서 각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화를 도모해 나간다. 따라서 본 아키타 아동·청년 플랜의 기본 목표는 ① 아동·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②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의 지원, ③ 아키타의 미래를 개척하는 아동·청년의 지원이다.

다른 지역의 지원계획과 달리, 아키타의 지원계획은 연령대에 따라서 ① 영유아기(태어나기 전~5세), ② 학동기(6세~12세), ③ 의무교육기(6세~15세), ④ 사춘기(13세~대략 18세), ⑤ 청년기(대략 18세 이후)로 구분하여, 그 연령대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19) 피어(peer) 카운슬링이란 동료, 동배, 대등자라는 의미로, 같은 환경이나 입장에서 생활하고, 같은 상황이나 체험을 공유하는 동료·동지에 의한 카운슬링을 말한다.

20) 아키타 아동·청년 플랜(あきた子ども 若者プラン), <http://www.pref.akita.lg.jp/www/contents/1292198235884/index.html>.

21) 아동·청년의 범위는 0세부터 대략 30세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30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 청년도 플랜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플랜의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이다.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청년기(대략 18세 이후)의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청년기의 시책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책은 직업능력의 개발·취업 등의 지원이다. 두 번째 시책은 다양한 배움의 장의 확보이다. 세 번째 시책은 지역의 활력을 담당하는 청년의 지원, 네 번째 시책은 만남과 결혼·육아 등에 대한 지원이다. 마지막 시책으로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시책인 직업능력의 개발·취업 등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에서는 경쟁에 이기기 위한 다양하고 고도의 기능·기술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무업자, 이직자 등의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개발, 직장정책 등을 지원한다. 이 첫 번째 시책을 구성하는 주요한 대응내용으로서는 첫째, 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의 지원이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다양화·고도화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외에, 이직자 및 전직자에 대해서는 헬로워크나 관계 기관과 연계한 직업능력개발로 조기 재취직을 지원한다. 두 번째 대응으로는 현내 정주(定住)를 위한 지원이 있다. 대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내 기업과의 합동취직설명회 및 면접회 등 매칭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현내 취직희망등록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현내 기업정보 등의 제공 등 현내 취직촉진을 위한 지원을 한다. 세 번째의 대응내용으로는 기업(起業)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세미나 등으로 대학생이나 청년층의 기업가 의식을 양성하면서, 지역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공단체와 연계하여, 기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의욕을 이끌어 내어 기업의 준비, 기업, 기업의 초기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 시책인 다양한 배움의 장 확보의 주요한 대응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인의 학습기회 제공이 있다. 현내의 다양한 고도의 학습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의 나라 칼리지(美のカレッジ)’의 실시 등, 현내 각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지도자의 육성에 힘쓴다. 두 번째 대응으로는 새로운 스타일의 ‘배움의 장’의 추진이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아침에 일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배우는 ‘아키타 아침 대학’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스타일의 ‘배움의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실시하는 NPO 등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

세 번째 시책의 지역의 활력을 담당하는 청년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의 내용으로는 첫째, 자원봉사·NPO활동 등에 대한 참가 촉진이 있다.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흥

미를 가지고, 장래 지역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의식을 배양함과 동시에, 지역만들기의 활동, 환경보전활동 등의 시민활동에 참가하기 쉽게 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NPO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현민이 이해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단체가 실시하는 참가자 확대를 위한 소개 이벤트의 개최 등을 지원한다. 둘째, 청년 문화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음악이나 예술(art)의 힘으로 지역을 활기넘치게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의 힘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네트워크화를 촉진하면서 다양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청년의 육성 및 지원이 있다. 활기찬 지역만들기에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청년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러한 청년들의 네트워크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주적·광역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청소년 그룹의 상호교류, 사회참가에 대한 지원, 활동의 발표기회의 제공 등에 힘쓴다.

네 번째 시책인 만남과 결혼·육아 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대응내용으로는 첫째, 만남과 결혼에 대한 지원이 있다.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하여 스포츠 및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인 참가를 촉구하여 남녀의 교류기회의 증대를 도모한다. 만남의 장의 창출과 만난 남녀의 결혼지원을 위하여 '건전한 아키타 만남 응원대'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남녀가 참가하기 쉬운 다양한 이벤트의 개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또 '아키타 결혼지원 센터'를 새롭게 조직하여 시정촌이나 관계 기관과 연계를 추진하여 현재 3개소에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만남 및 결혼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둘째, 기업에 의한 '일과 육아·가정의 양립지원'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근거한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의 책정과 실천에 대한 지원, 장려금 교부, 기업의 니즈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메뉴제도의 충실 등에 힘쓴다. 또 양립지원의 대응이 양호한 기업을 표창하고, 이와 동시에 웹사이트와 대중매체, 홍보지 등에서 우량사례를 소개하는 등, 기업이 장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PR을 실시하여 대응 기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work-life balance)에 대한 대응 확대이다. 청년의 일과 생활을 보람이 있게 만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키타현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해 가면서 다양한 인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녀 활력있는 직장선언사업소'의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의 실현을 위한 기업의 대응을 촉진한다. 또한 경영자를 포함하여 기업과 사회전체의 남성의 근무방식에 대하여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의식계발에 힘쓴다.



다섯 번째 시책으로는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 대한 지원이다. 이 시책을 구성하는 주요한 대응내용으로는 첫째, 청년의 자립을 위한 서포트로, 니트나 운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청년의 존재를 전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사람이라도 많은 청년에게 지원의 손을 뻗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노력으로는 먼저 사회로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담자에게 ‘다가서다’, ‘격려하다’ 등의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NPO나 전문기관 등에서 구성하는 ‘청년 자립지원 네트워크 회의’의 기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자립서포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포트 체제를 강화한다. 둘째, 장애가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다. 장애가 있는 청년이 친밀한 지역에서 안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에 배려한 주택생활 지원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립이나 사회참가를 위한 상담체제나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충실에도 힘쓴다.

## . 맺음말

일본의 청년과 관련된 지방자치의 여러 제도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과 동법에 의거하여 책정된 지원추진대강인 ‘아동·청년비전’에 근거하여,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작성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제도는 ‘아동’과 ‘청년’에 대한 대책을 함께 구성하여 다루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특히, 청년에 대한 시책은 대체적으로 30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책에 따라서 40세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청년에 대한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

그 내용의 면에서도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양육, 교육, 취업, 결혼에 대한 지원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본고에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에 대한 주요한 시책 및 왕따,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 등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려움을 안고 있는 아동 및 청년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그 문제에 맞게 지원 시책을 내세우고 있는 점 역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수 경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관계학박사)



#### 참고문헌

閣府, 「平成26年版子ども 若者白書」, 2014.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http://law.go.go.jp/htmldata/H21/H21HO071.html>.

아동·청년비전(子ども 若者ビジョン):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pdf>.

카나가와 청소년 육성·지원지침(かながわ 少年育成 支援指針): <http://www.pref.kanagawa.jp/cnt/f4151/p35672.html>.

군마현 아동·청년계획(群馬 子ども 若者計): <http://www.pref.gunma.jp/03/c2900034.html>.

오카야마 아동·청년육성지원계획(岡山 子ども 若者育成支援計): <http://www.pref.okayama.jp/page/334312.html>.

아키타 아동·청년 플랜(あきた子ども 若者プラン): <http://www.pref.akita.lg.jp/www/contents/1292198235884/index.html>.



Japan